

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(박수자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022-134	발의일자	2022. 11. 29.
		발 의 자	박수자, 이흥희, 김홍섭 표주숙, 신중양, 김향란, 신재화, 최준규, 이재운, 신미정, 김혜숙의원

1. 제안 이유

황강취수장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4조)
- 나. 위원의 해촉, 제적,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(안 제5조·제6조)
- 다. 위원장의 직무, 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·제8조)
- 라. 위원회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
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8조, 제79조, 제80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확보 예정(수당 등)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- 라. 기타사항
 - 1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2. 11. 23. ~ 11. 28.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3) 비용추계서 :
 - 4) 성별영향평가 :

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일환인 황강취수장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황강취수장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소속으로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합리적 지원 대책 마련
2.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, 공청회와 대정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결의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추진
3. 황강취수장 설치 및 물 통합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
4.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추진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경상남도의회 의원, 거창군의회 의원
2. 법조계·학계·언론계·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
3.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 1명, 재무 1명을 두되,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5. 제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2.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, 교대로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항강취수장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.
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해야 한다.

제10조(예산의 지원) 군수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조사·연구의뢰)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·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